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102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유민

피고1. B 주식회사

2. C

3. D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0. 30.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그중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1.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부터, 1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부터 각 2024. 2. 1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D 사이에 2023. 4. 17.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5,270,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5,270,33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 C,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다만 청구취지 제1항의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로 본다) 및 피고 C, D 사이에 2023. 4. 17.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24,374,6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요청으로 어음 2장을 총 183,000,000원으로 할인하여 주었는데 위 어음금이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22. 11. 30.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198,316,130원을 2022. 11. 30.부터 2023. 10. 31.까지 12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3회 지체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잔존 채무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분할상환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환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 C는 이 사건 상환약정에 따라 2회차까지 납부한 후 3회차부터 납부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23. 4. 1.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 C는 2023. 4. 17. 피고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상환약정에 따른 상환이행금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환이행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C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C는 그로 인해 원고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D은 피고 C에 대하여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로 피고 C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 절차에서 피고 D이 5,270,333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및 공동감보가액보다 작거나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5,270,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가액배상으로 5,270,33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차승우

별지